종합감사 결과

(기관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2017. 5.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순　서】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1

Ⅱ. 감사대상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 3

3. 분야별 지적사항 ····· 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대상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2. 감사범위: ’13.9.7.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7.2.13.~2.17.(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3.9.3.~9.6.(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 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임금채권보장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작업중지명령,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 지역은 2개시·1개군(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며, 행정대상* 사업장은 16,543개소, 근로자 수는 123,095명임

○ **(지역특성)** 통영지청 내 제조업의 비중은 전체의 16.4%(전국 15.0%)이나, **제조업 종사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61.2%**이며 대부분은 조선업 종사

○ **(고용동향)** '16.12월말 기준 **관내 평균 고용률은 통영시 57.4% 거제시 63.2%, 고성군 67.8%(전국 평균 60.1%)**

- '16년도 취업률은 32.2%로 전년보다 3.5%p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10,866명으로 전년보다 59.27%증가**

* ('15년) 구직 16,449명, 취업 5,877명, ('16년) 구직 20,581명, 취업 6,418명

- '16.12월 현재 주요 사업장의 **수주량이 전년대비 85.6% 감소**하여 **고용율의 급격한 감소 예상**

○ **(노사관계)** 관내 **노동조합 37개소**(조합원 11,044명)중 **한국노총** 소속은 4개소(352명), **민주노총** 소속은 **4개소**(8,872명)임

※ 상급단체 미가입 29개소(1,820명)

- '16.12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건**이며(임단협 교섭과정 등 단기파업)

-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요소 존재**

○ **(직원현황)** '17.3월 말 기준 정원 57명, 현원 53명(충원률 92.98%)

※ 부산청에서 인력지원 6명(조선업 희망센터 근무 4명 포함)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 취업지원 업무, 고용보험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외국인 전용보험 과태료 부과업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 등은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처리 업무가 일부 소홀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중대재해 조사업무 처리,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등이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총괄(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사례(명)
실제건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행정상조치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시정	개선	통보	
10	8	1	2	16*	-	3	13	2,645	2,645	-	-	1	-	1	-

*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3명(중복 처분: 3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1 계약절차 위반(주의)

○ **(위반내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거나(3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면서 5인 미만을 지명(6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서를 접수 즉시 고용보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지연 접수**(9건)

○ **(조치사항)** ○○○ **'주의'** 조치

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료 연체 사업장 미조치(시정)

○ **(위반내용)** 전용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함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미개시**(5개소)

○ **(조치사항)** 연체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시정)'**

4 인턴지원금 부정수급(회수)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1개소 1명, 지원금 2,645,600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2,645천원 '회수 등'** 조치

5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 **(위반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고용유지대상 근로자의 근로여부, 사업장 변경 여부 등 지급요건 확인소홀

○ **(조치사항)** 실제 휴직여부, 휴직 대상자 임금지급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명령(행정처분 포함) 등'** 조치하고,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1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경고)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처리과정에서 4건을 117~140일간 방치·지연 처리 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업무 소홀

○ **(조치사항)** ○○○ 등 3명 **'경고'** 조치

2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 실시 후 **결과보고 지연**(3건), 시정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범죄인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5건)

○ **(조치사항)** ○○○ **'주의'** 조치

※ △△△는 1 신고사건처리 부적정과 병합하여 '경고'

다. 산재예방 분야

1 중대재해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중대재해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견 등을 **보고하여야 하나 지연보고**(6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소홀**(1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2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시정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범죄인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6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3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작업중지명령 후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서면 확인 후 **현장 확인 없이 명령 해제**(17건)

○ **(조치사항)** ○○○ 등 4명 **'주의'** 조치